

성남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 : 분당지구, 판교지구,
GB우선해제지구, 성남여수지구, 성남고등지구, 국지도23호선변지구,
복정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, 도촌지구) 결정(변경) 고시

1. 성남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 : 분당지구, 판교지구, GB우선해제지구, 성남여수지구, 성남고등지구, 국지도23호선변지구, 복정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, 도촌지구)결정(변경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하고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
2. 관계도서는 성남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은 토지이음(<http://eum.go.kr>)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.

2025. 1. 6.

성 남 시 장

1.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내용

1) 성남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

※ 분당지구, 판교지구, GB우선해제지구, 성남여수지구, 성남고등지구, 국지도23호선변지구, 복정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, 도촌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

2.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 : 붙임 참조

1) 성남시 홈페이지(www.seongnam.go.kr-시정소식-고시공고)

3. 열람장소: 성남시청 도시계획과(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997, 동관 7층)

4. 기타알리는 사항

1) 분당 지구단위계획 중 단독주택용지에 관한 변경(안)은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행정절차 완료 후 별도 고시 예정임. 끝.